(月刊) 인터넷 법제동향

제104호 (2016년 5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영환

· 팀장/ 법제연구팀

양승설

·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도연

·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윤영

·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목 차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1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5. 2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2. 국회 제출 법률안 ---------- 4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6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유동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표명 (2016. 5. 12.)

○ EU 사생활 및 전자통신규칙 개정안 발효 (2016. 5. 16.)

○ EU 이사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안 승인 (2016. 5. 17.)

○ EU 집행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전략에 대한 의견 발표 (2016. 5. 25.)

□ **독일** ---------- 13

○ 연방상원, OTT 서비스도 통신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016. 4. 22.)

□ **미국** ---------- 15

○ 사물인터넷 법안 미 상원 통상위원회 통과 (2016. 4. 27.)

○ 미 상원, 매스해킹방지법안 발의 (2016. 5. 19.)

□ **프랑스** ---------- 18

○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안 상원 통과 (2016. 5. 3.)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5. 29.)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1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 세대원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세대원의 위임장 없이도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제29조제2항제5호마목·바목 신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이유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1조의6, 제51조의7 및 제51조의10, 제59조의2 신설)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공사의 확인 절차 및 사용정지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비상사태 시의 통신 확보에 관한 권한의 행사(현행 제65조제11호 삭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 통신확보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의 취급명령 및 다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속명령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함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도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및 제48조)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상급종합병원 및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제49조제2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으로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국회 제출 법률안

4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이 법은 빅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며 빅데이터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빅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빅데이터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5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사이버공격이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대두됨

-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격 발생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격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둠(안 제4조, 제6조)

○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7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를 다른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14조)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II 해외 입법 동향

1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유동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표명 (2016. 5. 12.)

❑ 개관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인터넷접속제공자(Internet Access Provider, IAP)가 유동 IP주소를 이용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유동 IP주소는 EU 데이터보호지침 95/46/EC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

○ 독일 정부에 대하여 정부 포털 이용자가 사용한 유동 IP 주소 등을 수집하는 행위를 텔레미디어법 제15조제4항[1]에 따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금지청구가 법원에 제기됨

○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신원을 밝힌 상태[2]에서 포털을 이용한 경우 IP주소 수집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양 당사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EU 데이터보호지침 95/46/EC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텔레미디어법(TMG, 통신미디어법)의 규정이 이 지침의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요청함 (2014. 10. 28.)

- 연방대법원은 1) 유동 IP 주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2) EU 데이터보호지침 95/46/EC 제7조(f)와 텔레미디어법 제15조제4항의 모순여부에 대해 선결 요청

1) 제15조 ④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정산정보) 이용 종료 후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현행 법률상, 규칙상 또는 계약상의 보관기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다.
2) 로그인 등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접속한 경우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지침 95/46/EC 제2조(a)에 의하면 인터넷접속제공자가 유동 IP주소를 이용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텔레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된 유동 IP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됨

○ 텔레미디어의 기능을 보장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제7조(f)[3]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 지침 제7조(f)과 달리 정당한 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의 법률 규정(텔레미디어법)[4]은 이 규정과 모순됨

※ 참고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78241&pageIndex=0&doclang=DE&mode=req&dir=&occ=first&part=1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EuGH-Generalanwalt-plaediert-fuer-groessere-Reichweite-des-Datenschutzes-bei-IP-Adressen-3207860.html

http://www.lto.de/recht/hintergruende/h/eugh-schlussantraege-generalanwalt-daten-speicherung-online-ip-adresse-personenbezogene-daten/

3) 지침 제7조(f)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및 기본적 자유 또는 이익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텔레미디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요금정산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기타 기능 보장을 위한 목적을 서비스 제공시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2 EU 사생활 및 전자통신규칙 개정안 발효 (2016. 5. 16.)

❑ 개요

○ EU 사생활 및 전자통신 규칙(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2003) 개정안(Amendment)[1]이 발효됨

❑ 주요내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발신하는 자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EU 사생활 및 전자통신 규칙(2003) 제19조 및 제21조를 개정하여,

- 전화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신원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광고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하고(제19조),
- 수신자가 발신번호표시 등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광고전화 발신을 금지하도록 함(제21조).

○ 광고전화 발신자에 대하여 수신자의 사생활·개인정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발신자 신원표시를 의무화[2]하는 등 무분별한 마케팅 전화를 방지하고자 함

※ 참고자료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https://en.wikipedia.org/wiki/Telephone_Preference_Service
http://www.squirepattonboggs.com/~/media/files/insights/publications/2016/05/weekly-data-privacy-alert-9-may-2016/weeklydpalert9may2016.pdf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6/524/pdfs/uksi_20160524_en.pdf

1) 발신번호표시가 제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의 발신을 금지함
2)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하여야 함

3 EU 이사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안 승인 (2016. 5. 17.)

❑ 개요

○ EU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 28개 회원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NIS) Directive)을 승인함 (2016. 5. 17.)

- 본 지침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2016년 8월 발효될 예정이며, 이 경우 회원국은 발효 후 21개월 이내에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하여야 함

○ **(경과)**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EU '사이버보안전략'의 일부로 지침(안)을 발의하였으며,

- EU 의회 및 이사회는 2015년 12월 동 지침(안)에 대한 합의를 완료함

※ 이는 정치적 합의에 해당하며, 지침 제정을 위해서는 EU 의회 및 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각 회원국은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하,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이하, CSIRTs)을 설치하여야 함

○ 사회기반서비스(essential service) 제공자*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igital service provider)**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함

-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에너지, 교통, 금융, 보건, 급수 등의 영역에서 사업하는 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검색엔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자

○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사회기반서비스 제공자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회원국의 담당기관 등에 통지 의무를 부과함

- 즉,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기관 또는 CSIRT에 통지하도록 함

- 이 경우 중대한 영향 해당 여부는 서비스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의 수, 사고 지속기간,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한편, 통지를 받은 담당기관 또는 CSIRT는 침해사고가 다른 회원국의 사회기반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도 통지하여야 하며,

- 침해사고 통지를 한 사회기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후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일반 공중에게 침해사고에 대해 알릴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581-2016-INIT/en/pdf
http://www.theregister.co.uk/2016/05/18/europe_adopts_new_cybersecurity_rules/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6/may/network-and-information-security-directive-set-to-come-into-force-in-august/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6/05/18/eu-council-adopts-the-network-and-information-security-directive/#page=1
http://www.dataprotectionreport.com/2016/05/eu-network-information-security-directive-expected-to-become-effective-in-august-2016/
http://www.dataprotectionreport.com/2015/12/council-and-european-parliament-reach-agreement-on-nis-directive/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5/17-wide-cybersecurity-rule-adopted/

4 EU 집행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전략에 대한 의견 발표 (2016. 5. 25.)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16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개함

- 위 평가서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보장 및 회원국 간 통일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필요한 4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 배경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1] 발표와 함께, 온라인플랫폼[2] 전략을 포함해 16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함 (2015. 5. 6.)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과 관련해 공개 설문 조사를 실시함 (2015. 9. 24.)

※ 공개설문조사의 주제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 디지털 환경 시스템의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 경제 등에 관한 것임

❑ 평가 내용

○ **(전제조건)** EU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럽연합 소속의 인터넷 기업 육성,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 확대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함. ① 유럽연합 국가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②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번창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시장 창출 ③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 최대화

2)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및 개인 소비자 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거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데이터 효용을 이용해 가치 및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의미함. 온라인플랫폼은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인터넷 기반 사업을 포함하는 개방적인 개념임

- ① 28개 회원국의 EU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3)]

- ② 경쟁,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의 자유, 보안에 관한 기존 법규들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여 시장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돕고, 시민이 안전하게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③ 문제지향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규정이 예측가능성, 유연성,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원칙)** 온라인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EU 디지털 단일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가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① 통일된 EU법규에 기초하여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경쟁 시장 마련

- ②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응하는 등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와 사회적 핵심 가치 보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성 확보

- ③ 이용자 신뢰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④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온라인플랫폼 시장 유지[4)]

※ 참고자료

http://www.euractiv.com/wp-content/uploads/sites/2/2016/04/2917_001-1.pdf

http://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commission-wants-to-regulate-us-dominated-online-platform-market/

http://www.cr-online.de/44170.htm

---

3)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범의 존재는 새로운 온라인플랫폼 출현을 저지해 온라인플랫폼 규모를 제한할 수 있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 효과 이익이 반감될 수 있음

4)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및 접근 차단은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됨

5 독일 연방상원, OTT 서비스도 통신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016. 4. 22.)

❑ 개요

○ 독일 연방상원은 메신저 서비스, 위치 관련 앱,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OTT 서비스도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es, TKG)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은 전통적인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도 통신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함[1)]

※ BEREC 보고서에 따르면 OTT 서비스란 "오픈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응용(앱)"을 의미함. OTT 서비스는 전자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OTT-0 서비스(공중전화와 같이 음성통화가 가능한 OTT 음성 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전자통신서비스와 경쟁하는 OTT-1 서비스(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OTT-2 서비스(전자상거래,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 OTT 서비스 관련 기존 입장

○ 독일 쾰른 행정법원은 Gmail 전자우편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통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2)](2015. 11. 11.)

○ EU집행위원회는 OTT 서비스는 신호 전달에 필요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EU 프레임워크 지침(Directive 2002/21/EC) 제2조(c)의 '전자통신서비스'[3)]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OTT 서비스에 관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OTT 서비스에 EU 프레임워크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4)]

---

1) 통신법의 내용에는 소비자 보호, 시장 규제, 개인정보보호, 전기통신에 대한 비밀유지 등이 있음
2) 동 판결의 결과는 오늘날 통신법 체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스카이프, 페이스북, 왓츠앱 등 타 OTT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법원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고등행정법원에 항소를 허용함(VG Köln Urteil vom 11.11.2015 - 21 K 450/15.)
3) 「EU 프레임워크 지침」 제2조 (c) : 전자통신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전자통신망에서 신호의 전달을 전부 또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통신서비스와 콘텐츠 전송·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방송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전송서비스(편성권은 제외)를 말한다.
4) BEREC은 EU 프레임워크 지침 제5조의 적용범위를 OTT-1과 OTT-2 서비스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 **(현황)** 통신분야의 디지털화로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서비스[5]를 통신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OTT 서비스에 대한 통신법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한 법조문이 불명확함[6]

○ 연방상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신법의 개정을 촉구함

- 기술적 실현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도입하여, 새로운 OTT 서비스제공자가 전통적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전통적인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통신법에 의해 규제받도록 함

- 즉, 메신저서비스 및 위치 관련 서비스와 같이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의 대체재는 전기통신서비스로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통신법상 의무를 져야 함

○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통신법에 의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사생활보호를 보장받아야 함

※ 참고자료

http://www.bundesrat.de/SharedDocs/TO/944/erl/8.pdf?__blob=publicationFile&v=1

http://www.heise.de/newsticker/meldung/Messenger-Bundesrat-will-WhatsApp-Skype-Co-schaerfer-regulieren-3181539.html

http://www.noerr.com/de/presse-publikationen/News/bundesrat-m%C3%B6chte-ott-dienste-regulieren.aspx

---

5) 스카이프(Skype),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 등의 메신저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등과 같은 신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등

6) 위치 관련 데이터는 전기통신법에서 특별한 규정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현재 규정으로는 무선 규정을 통한 위치 조사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는 기기의 GPS 센서의 이용을 통한 위치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음

6 사물인터넷 법안 미 상원 통상위원회 통과 (2016. 4. 27.)

❑ 개요

○ 미 상원 통상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작업반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물인터넷 혁신 및 성장법(안)이 통과됨 (2016. 4. 27.)

❑ 주요내용

○ 위원회는 공화당[1]과 민주당[2]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물인터넷 혁신 및 성장법(Developing Innovation and Growing the Internet of Things (DIGIT) Act)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함[3]

- 사물인터넷 관련 다양한 이슈 검토를 통해 의회에 유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적 제안을 권고할 수 있는 작업반[4] 운영

- 운영위원회는 IoT 활용 현황을 평가하여 산업저해 규제 도출, 소비자권익·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입법자가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의회에 알려주는 위원회 방식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참고자료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senate-panel-passes-internet-things-bill
http://thehill.com/policy/technology/277919-senate-panel-clears-internet-of-things-bill
https://morningconsult.com/2016/04/26/senators-prepare-u-s-internet-things/

1) 뎁 피셔(Deb Fischer), 켈리 아요트(Kelly Ayotte) 등 공화당 상원의원
2) 코리 부커(Cory Booker),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등 민주당 상원의원
3) 또한 위원회는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공개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실시하였음
4) 작업반은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및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의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됨

7 미 상원, 매스해킹방지법안 발의 (2016. 5. 19.)

❑ 개요

○ 론 와이든(Ron Wyden)과 랜드 폴(Rand Paul) 등 미국 상원의원은 정부의 해킹 및 감시 권한 확대에 반대하는 매스해킹방지법안[1](Stopping Mass Hacking (SMH) Act)을 발의함

- 이는 미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가 미국 연방법원에 법집행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미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1조 개정을 요청[2]한 것에 대한 반대 입법임

❑ 미 연방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 연방소송규칙 제41조는 법집행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제41조가 개정될 경우 사법부는 원격전자수색(remote electronic search)을 위해 필요한 영장을 보다 쉽게 발부할 수 있음

- 수색 대상인 전자기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전자기기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그 기기에 대해 원격 전자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 수색 대상인 기기가 미국의 관할권에 있지 않더라도, 판사는 복수의(수백 수천개의) 기기에 대해 단일수색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음

※ 일반적으로 원격전자수색을 위해서는 기기 및 장치에 맬웨어(malware)를 설치하여야 함

○ 전자수색이 있었을 경우 대상기기 소유자에게 수색이 있었다고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만 하면 됨

- 이런 원격전자수색은 정부가 그 실행 여부를 밝히는 경우가 드물어 수색권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에 위배될 수 있음

---

1)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제41조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함(매스해킹방지법 제2조)
2) 연방 대법원은 미국사법부의 개정 요청을 승인하였고(2016. 4. 28.), 미 의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규칙제정수권법(Rules Enabling Act)에 따라, 2016년 12월 1일 개정 규칙이 발효될 예정임

❑ 평가

○ 인터넷협회,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 Access Now, Center for Demcracy and Technology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감시 및 전자기기 해킹 권한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미 연방소송규칙 제41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음

- 인터넷협회장 마이클 베커만(Michael Beckerman)은 미 연방소송규칙 제41조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미 연방소송규칙 제41조가 개정된다면 한 명의 판사가 발부한 단일 수색 영장으로 수 백만 개의 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봇넷 공격(botnet attack)을 당한 피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 역시 정부의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어, 법규를 잘 준수한 피해자도 피의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미 사법부는 단순히 수색장소를 변경한 이번 개정사항은 기존의 보호 및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3)]

- 단일수색영장 허용은 하나의 봇넷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94개의 연방 법원에 각각 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참고자료

https://medium.com/@RonWyden/shaking-my-head-5c1b60db9086#.8fisuncum
https://www.wyden.senate.gov/download/?id=959B9967-F666-404F-B2D5-2520586107C2&download=1
https://www.wyden.senate.gov/download/?id=599A82D4-F984-46B1-9BFF-F8487BBF279C&download=1
http://www.politico.com/tipsheets/morning-cybersecurity/2016/05/stop-mass-hacking-act-gets-debate-started-prosecution-of-cyber-crimes-at-issue-bank-heists-around-the-globe-214411
http://www.patentlyapple.com/patently-apple/2016/05/us-senators-introduce-act-to-stop-mass-hacking-by-government-spy-bots.html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60519/10200734487/senators-wyden-paul-introduce-smh-bill-to-stop-massive-expansion-govt-computer-hacking.shtml?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techdirt%2Ffeed+%28Techdirt%29

3) 이에, 와이든 상원의원은 “수색장소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닌,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체적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8 프랑스,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안 상원 통과 (2016. 5. 3.)

❑ 개관

○ 디지털법안(Projet de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n°3318, 정부제출법안)이 국민의회에 제출됨 (2015. 12. 9.)

○ 공화국 헌법, 법률, 행정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는 동 법안에 대해 검토·수정을 거쳐 법률안[1]을 제출함 (2016. 1. 15.)

○ 국민의회(하원)가 상기 법률안에 대해 표결에 부침 (2016. 1. 21.)

- 국민의회는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정부발의안을 최종적으로 총 48개 조항으로 수정하여 채택함 (2016. 1. 26.)

○ 상원에서 찬성 322표 반대 1표로 디지털법안이 수정가결 (2016. 5. 3.)

❑ 주요내용

○ 공공알고리즘의 개방(신규 조항)

- 공공알고리즘에 관한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설정

- 알고리즘 방식의 처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에게 행정청에게 해당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규칙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1) TEXTE DE LA COMMISSION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E LA LÉGISLATION ET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A RÉPUBLIQUE

○ 공공 연구 결과의 이용 금지 기간 단축(수정 조항)

- (공공 자금의 지원을 받은 출판물의)저자의 해당 저작물 처분·이용 금지기간을 절반으로 감축

- 저작물 이용 금지기간 이후 간행·배포를 허용하고 관련된 연구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비디오 게임 시장 활성화(신규조항)

- 비디오 게임 관련 조직의 진흥 및 게이머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경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비디오 게임 분야의 발전 지원

○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수정 조항)

- 정신·신체적 불리함으로 인해 웹페이지의 접근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을 법률로 규정

- 웹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웹페이지 접근성 향상

- 웹페이지는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공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들의 웹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참고자료

http://www.senat.fr/leg/pjl15-325.pdf

http://www.gouvernement.fr/action/pour-une-republique-numerique

참고 웹사이트

1. 국내 웹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국외 웹사이트

[1] http://curia.europa.eu

[2] http://www.heise.de

[3] http://www.lto.de

[4] http://www.squirepattonboggs.com

[5] http://www.legislation.gov.uk

[6] http://www.theregister.co.uk

[7] http://www.out-law.com

[8] https://www.huntonprivacyblog.com/

[9] http://www.dataprotectionreport.com

[10] http://www.consilium.europa.eu

[11] http://www.euractiv.com

[12] http://www.cr-online.de

[13] http://www.bundesrat.de

[14] http://www.noerr.com

[15] http://www.natlawreview.com

[16] http://thehill.com

[17] https://morningconsult.com

[18] https://medium.com

[19] https://www.wyden.senate.gov

[20] http://www.politico.com

[21] http://www.patentlyapple.com

[22] https://www.techdirt.com

[23] http://www.senat.fr

[24] http://www.gouvernement.fr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月刊)인터넷 법제동향」(제104호)”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 벤처타워